

부속서 III
투자예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미얀마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미얀마의 기존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비합치 조치를 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다음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1) 유엔통계국 버전 2.1의 중앙상품분류(CPC), 또는

2)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차 개정안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수준을 말한다.

- 마. **의무유형**은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를 지칭한다.
- 바. **조치내용**은 각 경우에 맞게,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 사. **조치근거**란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조치근거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이 목록에 포함된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과 목록 나의 내용 사이에 중복이 있는 경우, 미얀마는 목록 나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5. 이 목록의 목적상,
- 가. “직접투자”란 법과 규정에 따라 연방 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투자를 말한다.
 - 나. “외국인투자”란 연방 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직접투자를 말한다. 그리고
 - 다. “미얀마” 또는 “연방”이란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얀마는 제8장(서비스 무역)에 합치되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정부 고시에 의하여 수시로 명시되는 안보 및 방위를 위한 제품의 제조(ISIC 2927, 7522) - 국방을 위한 무기 및 총포탄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ISIC 2927) - 국가 우표 발행, 연방을 대표하여 우체국 운영자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우체국 및 사서함의 설치 및 임대(ISIC 6411, 2221) - 탄소 배출 저감에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천연림 및 산림지대의 관리(ISIC 0200) - 우라늄 및 토륨과 같은 방사성 금속의 타당성 조사 및 생산(ISIC 1200, 2330) - 전력체계 통제(CPC 8631) - 전기 사업에 대한 검사(CPC 8621) |
| 산업분류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p>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
| 조치내용 | : |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는 오직 연방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1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1 항: 주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활동 목록 |

2.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어를 포함하는 민족어로 된 정기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ISIC 2212, CPC 3241, 8911, 8912) - 민물 어업 및 관련 서비스 (ISIC 0500, CPC 0421, 8615) - 동물 수출입 검역소 설립(축산수의국이 동물 검사 및 허가 발급을 담당한다) (ISIC 0500, CPC 8352, 8359, 8612) - 산림지대 및 정부 운영 천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 (ISIC 0200) - 「광산법」에 따른 중소규모 기업의 광물 시굴, 탐사 타당성 조사 및 생산 (ISIC 1110, 1421, 1429) - 중규모 및 소규모에 의한 광물 제련 (ISIC 2320) - 천부유정 생산 수행 (ISIC 1030, 1110) - 외국인 비자 및 체류허가 스티커 인쇄 및 발급 (ISIC 2221, 6411, CPC 89122, 91210) - 비취 또는 원석의 시굴, 탐사 및 생산 (ISIC 1429, 3691)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p>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
| 조치내용 | : | 외국인 투자자는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1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2 항: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수행이 허용되지 않는 투자 활동 |

3.

| | |
|------|---|
| 분야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득어류처리장이나 어업 항구 및 어류 경매시장 건설 (ISIC 0500, 4520, 4530) - 수산업 관련 연구 활동 (CPC 8114) - 수의료 진료소 (CPC 8351, 8352, 8559) - 농경지에서의 작물 재배, 현지시장 및 수출용 농산물 유통 (ISIC 0111, 0112) -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국내 마케팅 (ISIC 2520, 1920) -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화학물질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1110, 1120, 2411) - 가연성 고체, 액체, 기체 연료 및 에어로졸의 제조 및 국내 유통 (아세틸렌, 휘발유, 프로판, 헤어스프레이, 향수, 탈취제, 살충 스프레이) (ISIC 2411, 4020, 5141, 5050, 2320, 2424) - 산화제 (산소, 과산화수소) 및 압축 가스 (아세톤, 아르곤, 수소, 질소, 아세틸렌)의 제조 및 국내 마케팅 (ISIC 2411, 2812) - 부식성 화학물질 (황산, 질산)의 제조 및 국내 마케팅 (ISIC 2411, 2421, 2429) - 압축, 액화 및 고체 형태를 포함하는 산업용 화학 가스의 제조 및 유통 (ISIC 2411, 2412, 2429, 2330, 5149) - 비스킷, 웨이퍼, 모든 종류의 누들류 및 버미첼리와 같은 곡물 가공품의 부가가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1531, 1544, 1549) - 사탕, 코코아 및 초콜릿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과자류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1543, 2925) - 밀크와 유제품을 제외한 식료품의 보존, 캔 포장, 가공 및 국내 유통 (ISIC 1512, 1513, 1532, 1542) - 맥아 및 맥아주 및 비탄산 제품의 제조 및 국내 마케팅 (ISIC 1553) - 모든 종류의 증류주, 알코올, 주류 및 비알코올성 음료의 제조, 증류, 배합, 정류, 병입 및 국내 유통 (ISIC 1551, 1552, 1554, 3131) - 모든 종류의 정제 얼음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1554, 4100) - 정화된 식수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1554, 4100) - 모든 종류의 비누의 제조 및 국내 유통 (ISIC 2424, 5139, 5211) - 모든 종류의 화장품의 제조 및 국내 도매 (ISIC 5139, 5211) - 주거형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의 개발, 판매 및 리스 (ISIC 4520, 4530, 7010) - 영화 제작 (ISIC 9211, 9213, 9214) |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시민 소유의 실체 또는 미얀마 시민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얀마 투자 규칙」에 따라 그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은 80 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
| 조치근거 |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3 관 - 미얀마 투자 규칙, 제 22 규칙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3 항 |

4.

| | | |
|-----------------|---|---|
| 분야 | : | 제조업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하여 생산된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ISIC 3522) -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서비스 간의 교차 소유(ISIC 2211-2230) - 외국어로 된 정기 신문의 출판(ISIC 2212) - 수의료용 생물학적 제품의 제조 및 유통(ISIC 7310) - 수의료용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ISIC 3311) - 농업용 살충제, 비료, 호르몬, 제초제 등의 생산, 보관, 유통 및 수출(ISIC 2411- 2412)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전화기의 생산 및 국내 마케팅(ISIC 3220) - 제지용 펄프의 대규모 제조(ISIC 3411, 2021, 2101) - 백신 제조(ISIC 2423) - 백신 및 진단검사키트 생산에 관한 연구(ISIC 7310-7320) - 기관차, 차량, 화차 및 예비 부품의 제조 및 정비와 철로 정비(ISIC 2710, 2811, 2911, 2915, 3190, 3520, 3710) - 열차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의 발전(ISIC 3110) - 위성 통신 품목의 생산 및 유통(ISIC 3530, 6220, 6420) - 레이더 통신 품목 및 관련 장비의 생산 및 유통(ISIC 3312, 6420, 3832) - 무선 통신 품목의 생산 및 유통(ISIC 3210, 3220, 3230, 9213) - 교량 연결 품목(PC 스트랜드, PC 바, 닛 등), 철강 프레임, 발리 프레임, 플레이트 거더, 철강 트러스, 교량 및 관련 철강 구조 콘크리트, 철강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등의 생산 및 국내 마케팅(ISIC 4520, 4530, 4540, 2695, 2710, 6303, 2811)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

5.

| | | |
|-----------------|---|---|
| 분야 | : | 농업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축산업 (ISIC 1110) - 육종 농가 및 부화장(가금류) (ISIC 0140, 1511) - 동물 품종의 유전학적 연구, 유전자 보전 및 보급 (ISIC 5121, 7310) - 동물 품종(번식용 동물, 냉동 정액 스트로 및 배아)의 수입, 생산 및 마케팅 (ISIC 0121, 0140, 0122) - 동물 사료 및 동물성 제품의 안전성을 위한 실험실 서비스 (ISIC 1533, 2429) -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한 실험실 서비스 (ISIC 1533, 2429, 8511) - 동물 보건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서비스 (ISIC 8520) - 종자의 수입, 생산, 국내 마케팅 및 재수출 (ISIC 2921, 5239) - 신품종 식물의 수입, 생산 및 유통 (ISIC 0111, 0112, 2421) - 잡종 종자의 생산 및 수출 (ISIC 0111, 0112, 0113, 1514, 2921) - 농업을 위한 실험실 서비스 (ISIC 2919) - 농업 및 농산물에 관한 연구 (ISIC 7310) - 계절 작물의 생산 (ISIC 0113, 0111, 3699) - 전통 허브 재배 및 생산 (ISIC 0111, 0112, 2421) - 전통 의약 연구 및 실험실 (ISIC 3311, 2423) - 진주 양식 및 생산 (ISIC 0501, 3691)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

6.

| | | |
|--------------------|---|---|
| 분야 | : | 수산업 |
| 하위분야 | : | - 수산 자원 및 어종 관련 투자 (ISIC 0501, 0502) - 해양 어업 (ISIC 0501)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 (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 (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 |
| 조치근거 |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

7.

| | | |
|-----------------|---|--|
| 분야 | : | 수산업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어류, 새우 및 그 밖의 수생 생물의 어업 (ISIC 0501) -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선상 가공에 관련된 서비스 및 그 밖의 관련 서비스와 해산물 개발 (ISIC 1511, 1512, 1549) - 민물 수산업 개발에 관련된 서비스 (ISIC 0501) - 양식 및 가공 제품에 대한 검역 품질 관리, 양식용 사료, 의약품 및 화학물 공급에 관한 서비스 (ISIC 0502, 1512)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CPC 88200 |
| 정부수준 | : | 중앙(해양 수산업), 주 및 지방(민물)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
| 조치내용 | : | <p>투자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규정된 형식으로 어업국에 신청한다. 그러한 투자자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 기관, 현재의 합작투자회사 또는 민간 미얀마 회사와 합작투자를 설립한다.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투자자는 다른 수산업 수역에서 수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어선의 어업권 관련 법(법 제 11/89 호) 제 3 장제 6 항]</p> <p>외국 어선의 어업권 관련 법(법 제 11/89 호) 제 6 절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어업권을 받은 투자자는 수산업부에서 면허를 발급받고 등록한다.</p>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어선의 어업권 관련 법(법률 제 11/89 호) - 미얀마 해양수산업법(법률 제 9/90 호) - 제 188 절에 따라, 2008 년 미얀마 헌법의 표 2 는 2011-2012 회계연도에 주 및 지방 정부로 이전되었다. |

8.

| | | |
|-----------------|---|---|
| 분야 | : | 임업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임지 및 토지에서의 벌목 (ISIC 0200) - 조림의 수립 (티크, 견목, 대나무, 등나무 등) (ISIC 2010) - 목재 기반 산업 및 조림 이행 관련 사업 (ISIC 2010, 2021, 2023) - 산림지대 및 자연 토지에 기반한 생태 관광 (ISIC 7513) -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입 유전자변형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복제 및 유통 - 고가 희귀 수목 개량종 생산, 보전 및 조직 배양 생산에서 첨단기술연구 및 상업적 활동 (ISIC 0200, 7310, 7320) - 산림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ISIC 7320) - 육종 및 생산을 위한 야생 동물 및 식물 수입, 상업적 목적의 수입 및 수출을 통한 현지 또는 해외 유통 (ISIC 0121, 0122, 0130) - 대규모 광물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수반하는 탐사, 조사, 타당성 조사 및 탐험 (ISIC 2699, 7422, 1421, 1429)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 (제 10.3 조) |
| 조치내용 | : | 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

9.

| | | |
|-----------------|---|--|
| 분야 | : | 임업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크 추출 및 티크 판매 (ISIC 0200) - 목재 기반 산업 (ISIC 2010) - 촌락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조성한 촌락 소유의 화목 조림지를 제외한 조림의 조성 및 보전 (ISIC 0200)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4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규정된 어떠한 경제기업도 미얀마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와 그 밖의 어떠한 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제조직 간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인에 의하여, 또는 조건을 전제로 어떠한 경제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5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도록 규정된 경제기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구매, 조달, 개량, 보관, 보유, 운송, 판매 및 이전에 관한 조건을 금지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p> <p>「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86/2017 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천연림에서 추출된 원목을 이용하는 목재 기반 산업에서 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다.</p> |
| 조치근거 | :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86/2017 호 |

10.

| | | |
|--------------------|---|--|
| 분야 | : | 광업 및 채석업 |
| 하위분야 | : | -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 및 추출(ISIC 1110) -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 및 추출에 관련된 서비스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조치내용 | :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 및 추출은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제한된 활동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공고가 있을 시 국제 입찰 절차를 완료한다. 관리위원회는 전기에너지부와 투자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의장으로 활동하는 1 명을 포함하는 미얀마 측 4 명과 투자자 측 3 명의 총 7 명으로 구성된다. |
| 조치근거 | : |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 국영경제기업법 관련 지침 |

11.

| | | |
|--------------------|---|--|
| 분야 | : | 광업 및 채석업과 광업 및 채석업 부수 서비스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광물 생산을 위한 외국 투자를 수반하는 시굴, 조사, 타당성 조사 및 탐사(ISIC 1010, 1020, 1310, 1410) - 대·중·소규모 광물 생산을 위한 시민 투자를 수반하는 시굴, 조사, 타당성 조사 및 탐사(ISIC 1010, 1020, 1310, 1410) - 외국 투자를 수반하는 원석, 신변장식용품 및 완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ISIC 1429, 3691) - 시민 투자를 수반하는 원석, 신변장식용품 및 그 제품의 탐사, 완성 및 마케팅 (ISIC 1429, 3691)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조치내용 | : |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국영경제기업으로서 다음의 경제 활동을 수행할 단독 권리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주, 비취 및 귀석의 탐사, 추출 및 수출, 그리고 2. 광물의 탐사, 추출 및 수출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4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규정된 어떠한 경제기업도 미얀마의 이익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와 그 밖의 어떠한 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제조직 간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인에 의하여, 또는 조건을 전제로 어떠한 경제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5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도록 규정된 경제기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구매, 조달, 개량, 보관, 보유, 운송, 판매 및 이전에 관한 조건을 금지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p> <p>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p> |

조치근거

:

- 국영경제기업법(제 9/89 호)
- 1994 년 미얀마 광산법 및 그의 2015 년 개정법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 | | |
|-----------------|---|--|
| 분야 | : | 광업 및 채석업과 광업 및 채석업 부수 서비스 |
| 하위분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연안 시추 건설을 위한 장비, 부속품 및 설비 부품의 수입, 생산, 건설 및 설치 (ISIC 3511, 4510, 1110, 1120) -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지구화학적 방법에 의한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이해를 위한 장비, 부속품 및 설비 부품의 수입, 생산, 건설 및 설치 (ISIC 3511, 4510, 1110, 1120) - 석유 및 가스 개발, 생산 및 연구를 위한 장비, 부속품 및 설비 부품의 수입, 생산, 건설 및 설치 (ISIC 3511, 4510, 1110, 1120) - 석유 및 가스의 파이프라인망 건설 및 운송을 위한 장비, 부속품 및 설비 부품의 수입, 생산, 건설 및 설치 (ISIC 4020, 4510, 4520, 4530) |
| 산업분류 (ISIC/CPC) | : | ISIC, CPC |
| 정부수준 | : | 중앙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조치내용 | : |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국영경제기업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추출 및 판매와 그것의 제품 생산을 수행할 단독 권리를 갖는다.</p>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4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어떠한 경제기업도 미얀마의 이익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와 그 밖의 어떠한 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제조직 간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또는 조건하에 어떠한 인에 의하여, 또는 조건을 전제로 어떠한 경제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5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1989년 국영경제기업법」 제 3 절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수행되도록 규정된 경제기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구매, 조달, 개량, 보관, 보유, 운송, 판매 및 이전에 관한 조건을 금지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p> <p>위에 언급된 하위분야에서의 투자 활동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다.</p> |

조치근거

:

- 국영경제기업법(제 9/89 호)
- 1918 년 유전법 및 그의 2010 년 개정법
- 2017 년 석유 및 석유제품법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2 절제 4 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15/2017 호 제 4 항: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투자 활동

13.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토지 소유권)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
| 조치내용 | : | <p>주정부는 주정부 내 모든 토지와 지면 위와 아래, 수면 위와 아래 및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의 최종 소유자이며, 「2008 년 미얀마 헌법」에 따른 법에 따라 시민에게 사유재산권, 상속권, 민간주도권 및 특허권을 허용한다.</p> <p>「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50 절제 1 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사적 소유 또는 관련 정부 부처, 미얀마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기관, 또는 연방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장기 임대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시민 투자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p> <p>「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50 절제 5 관은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시민 투자자에 의한 토지 임대와 토지 사용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p> <p>다만, 정부 소유 토지, 정부 부처, 기관이 소유한 토지와 시민이 소유한 민간 토지는 업종, 산업 및 금액에 따라 최초 50 년까지 임차될 수 있으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10 년 단위로 2 회 연속하여 연장이 가능하다.</p> |
| 조치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년 미얀마 헌법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 1987 년 부동산 양도제한법 - 2012 년 농지법 제 3 장제 9 절제 1 관부터 제 6 관까지 - 2012 년 공한지, 휴경지 및 처녀지 관리법 제 4 장제 11 절제 1 관부터 제 5 관까지, 제 5 장제 12 절, 제 14 절 |

14.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76 절에 따라, 미얀마는 다음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합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미얀마 시민 투자자 및 시민 소유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및 훈련, 그리고 - 미얀마 시민이 소유한 사업이 운영되거나 다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면제 및 구제 |
| 조치근거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76 절 |

15.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
| 의무유형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조치내용 | : | 미얀마는 「미얀마 투자법」 제 41 절에 따라 금지된 투자로 규정된 다음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연방에 유해 또는 유독 폐기물을 들여오거나 초래할 수 있는 투자 활동 나. 연구개발 목적의 투자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여전히 시험 중이거나 사용, 파종 또는 경작 승인을 얻지 못한 기술, 의약품, 동식물 및 기구를 들여올 수 있는 투자 활동 다. 연방 내 민족 집단의 전통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활동 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활동 마.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지대하게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 활동 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금지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활동 |
| 조치근거 |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1 절 - 2017 년 미얀마 투자 규칙, 제 12 규칙 |

16.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의무유형 |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조치내용 | : | 미얀마는 이사가 연방 거주자라고 언급하는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조치근거 | : | 2017 년 미얀마 회사법 |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미얀마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다음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1) 유엔통계국 버전 2.1의 중앙상품분류(CPC), 또는

2)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차 개정안

라. **정부수준**이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수준을 말한다.

마. **관련의무**는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바.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 **기존의 조치**는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에 대하여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목록 가에 포함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목록 가와 이 목록의 내용 사이에 중복이 있는 경우, 미얀마는 이 목록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5. 이 목록에서

가. “직접투자”란 법에 따라 연방 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투자를 말한다.

나. “외국인투자”란 연방 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직접투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 “연방”이란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얀마는 제8장(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미안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비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2.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 및 메커니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얀마가 현재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양자, 지역 또는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특혜적 대우, 그리고 2. 아세안 회원국 간의 모든 협정이나 약정에서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특혜적 대우 |
| 기존의 조치 | : | - |

3.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얀마는 미얀마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가 인정했거나 인정했어야 할 것 외의 분야 또는 산업에서의 투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미얀마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ISIC 또는 CPC 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분야 또는 산업은 그 당시 미얀마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어야 할 것이다. 2. 미얀마는 신생 분야 또는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ISIC 코드 버전 3 또는 CPC 버전 2.1 에 분류된 모든 분야는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신생 분야 또는 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기준의 조치 | : | - |

4.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국방, 공공 질서 및 안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5.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운영되는 투자 2.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
| 기존의 조치 | : | 국영경제기업법(제 9/89 호) |

6.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존재했던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면허나 허가를 위한 승인에 부과되는 어떠한 조치 및 조건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7.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제 47 절제 1 관에 따른 투자의 설립 또는 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8.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원주민에게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2008 년 미얀마 헌법 제 96 절, 제 188 절 및 제 196 절 - 미얀마 투자 규칙 |

9.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또는 토지 용도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도시 계획, 개발 통제, 보전 및 보존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에 관한 정책에 따라 토지에 실시될 수 있는 그 밖의 유형의 활동을 포함하여 미얀마 영역 내 토지의 취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0.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보건평가, 문화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적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1.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매각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2.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토지, 문화재, 토지에 연계된 천연 및 광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3.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모든 국영경제기업의 행정,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4.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관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5.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모든 수준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특혜 또는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 2017 년 미얀마 회사법 - 2015 년 중소기업발전법 |

16.

| | | |
|--------------------|---|--|
| 분야 | :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 규칙」의 제 12 규칙에 따라,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에 따라 금지된 투자 활동에 관한 고시를 발행할 수 있다. |
| 기존의 조치 | : | - 2016 년 미얀마 투자법 - 2017 년 미얀마 투자 규칙 |

17.

| | | |
|--------------------|---|---|
| 분야 | : | 제조업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다음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2. 맥아 및 맥아주와 비탄산 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 그리고 3. 모든 종류의 증류주, 알코올, 주류, 및 비알코올성 음료의 증류, 배합, 정류, 병입 및 마케팅 |
| 기존의 조치 | : | - |

18.

| | | |
|--------------------|---|---|
| 분야 | : | 농업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다음과 관련한 모든 농업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계절 작물의 생산 및 재배 2. 계약 영농 3.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생산 및 수출 4. 다년생 작물의 생산 및 재배 5. 과수원 생산, 그리고 6. 진주 탐사, 채취 및 수출 |
| 기존의 조치 | : | - |

19.

| | | |
|--------------------|---|--|
| 분야 | : | 수산업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민물 및 해수에서의 어류 및 새우의 해양 어업, 육종 및 생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

20.

| | | |
|--------------------|---|--|
| 분야 | : | 임업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목재 및 티크 추출, 임지 및 미얀마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토지에서의 벌목, 티크와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국내외 판매 그리고 천연림에서 채취한 미가공 목재를 사용하는 목재 산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제 86/2017 호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

21.

| | | |
|--------------------|---|--|
| 분야 | : | 광업 및 채석업과 광업 및 채석업 부수 서비스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 생산 및 판매 -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와 생산에 관련된 서비스 - 금속의 탐사, 채취 및 수출 - 비취 및 귀석의 탐사, 채취 및 수출, 그리고 - 건설 및 장식용 암석의 탐사, 채취 및 수출 |
| 기존의 조치 | :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

22.

| | | |
|--------------------|---|--|
| 분야 | : | 광업 및 채석업과 광업 및 채석업 부수 서비스 |
| 하위분야 | : | -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미얀마 광산법」 과 그 개정법에 따라 모든 광물, 원석, 금속성 광물, 산업용 광물 또는 암석의 시굴, 탐사, 생산, 구매, 저장, 가공, 운송, 판매 및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1994 년 미얀마 광산법 및 그의 2015 년 개정법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

23.

| | | |
|--------------------|---|--|
| 분야 | : | 전기 생산 |
| 하위분야 | : | 전기 생산 및 전기 생산 서비스 |
| 산업분류 (ISIC/CPC) | : | - |
| 정부수준 | : | 중앙 또는 지방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미얀마는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전기의 시굴, 탐사, 생산, 구매, 보관, 가공, 운송, 판매 및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1989 년 국영경제기업법 |